



모두를 위한 존중



뉴욕시 공립학교의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은 우리 뉴욕시의 문화적 다양성과 존중에 기여하는 바가 큼니다.

이런 차별,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림은 학교, 학교 운영 시간, 방과 전 또는 후, 교내, 학교 지원 이벤트 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은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림 및 실질적 또는 추정적 인종, 피부색, 시민권/이민 상태, 종교, 신념, 출신 국가, 장애, 민족, 성별, 성적 정체성, 성별 표현, 성적 지향 또는 몸무게에 따른 차별이 없는 안전하고 지원적 학습 환경을 유지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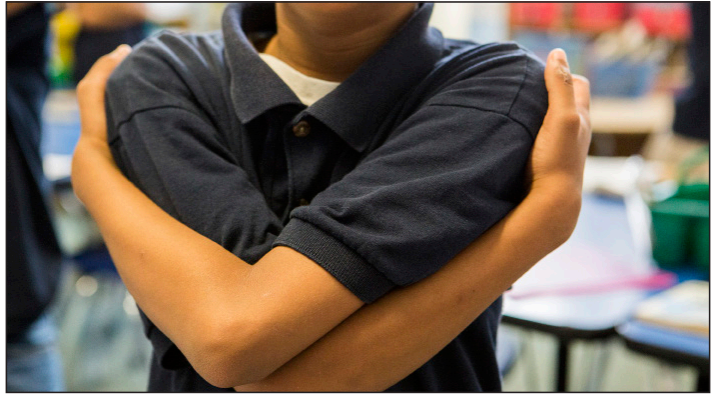
뉴욕시 공립학교를
안전한 곳, 모든
학생을 지원하는
곳으로 만들어
갑시다

이 정책은 학생들이 다른 학생 및 직원이 학생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행동이 교육 진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거나 학교 커뮤니티의 건강, 안전, 도덕성 또는 안녕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때 학교 외의 장소에서도 금지될 것입니다.

교육감 규정서 및 규율 규정의 사본은 학교장실 및 온라인 <http://schools.nyc.gov/default.aspx>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존중



만약 본인이 다른 학생 또는 직원으로부터 괴롭힘, 집단 따돌림 또는 차별을 받았다고 믿거나 또는 이런 행동을 목격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학생 또는 직원으로부터 괴롭힘, 집단 괴롭힘 또는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및 이런 행동에 대해 인지한 모든 학생들은 이런 행동을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 ▶ 다른 학생으로부터 집단 따돌림, 협박, 차별 또는 괴롭힘을 받은 학생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학교의 모든 타인 존중 포스터에 기재된 학교 교직원이나 기타 모든 학교 직원들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 ▶ 학생은 교직원 대 학생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림에 대해 학교장/담당자 또는 특별 조사 담당실(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www.nycenet.edu/offices/osi/CPR_Form/form 를 참고하십시오.
- ▶ 학생은 인종, 피부색, 민족, 종교, 신념, 출신 국가, 성별, 성 정체성, 성적 표현, 성적 지향, 시민권/이민 상태, 몸무게 또는 장애에 기반한 교직원의 학생 차별을 학교장/담당자 또는 평등한 기회 담당실(Office of Equal Opportunity)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schools.nyc.gov/Offices/GeneralCounsel/Investigative/OEO/ComplaintForm/를 방문하시거나 (718) 935-3319로 전화하십시오.
- ▶ 이런 행위가 효율적으로 조사 및 다루어질 수 있도록 사건이 발생한 후 가능한 빨리 보고하여야 합니다.
- ▶ 직원은 반드시 이런 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적절한 중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다음 이메일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RespectForAll@schools.nyc.gov

따돌림/괴롭힘 신고에 관한 학생/학부모 안내문

1. 이와 같은 일을 당했을 경우 RFA 담당관(들) 또는 기타 어느 교직원에게라도 사건을 보고하십시오.
2. 부모님들께서는 신고 후 OORS 번호를 달라고 하셔서 보관하시면, 조사의 경과를 볼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학교 측에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 및 가해 학생 측 부모 모두에게, 학생 기록 기밀규정을 다른 뉴욕주 및 연방법에 의거하여 해당 사건의 혐의가 인정되었는지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4. 해당되는 경우, 신고 학생 및 가해 학생을 가이드نس 카운슬러, 학교 소셜 워커, 심리사 또는 기타 적절한 학교 직원에게 별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5. 적절하다면, 학교장/지명자는 감수성 훈련, 상담 및/또는 상담을 위해 커뮤니티 기관으로의 의뢰, 지원 및 교육 등의 중재 방법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6. 본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학생은 뉴욕시 교육청 훈육 규정 및 교육감 규정 A-443에 의거하여 적절한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7. 학교장/지명자는 반드시 위반 행위가 근절되었는지 확인하는 후속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괴롭힘이나 차별을 보고한 사람 또는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보복은 금지됩니다. 이런 문제로 보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즉시 학교 관리자에게 연락하십시오.